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소비자기본법」 및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‘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’에 의하여 구미과학관 사용료 반환 시 배상금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
사용료 전액과 10% 배상금 합산하여 반환(안 제15조)
- 나. 사용허가 취소 신청일 개정(안 제15조)
 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⇒ 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”로 개정
- 다.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 수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진평동 704번지”를 “3공단1로 219-1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의무경찰, 전투경찰”을 “의무경찰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대관료는 이를”을 “대관료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대관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유 또는 과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”를 “사유로”로, “때에는 전액 반환”을 “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
3.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행사와”를 “행사와 시장이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위치) 구미과학관(이하“과학관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진평동 704번지에 둔다.	제2조(위치) ----- ----- 3공단 1로 219-1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5. “군인”이란 하사 이하의 의무복무중인 군인, 의무경찰, 전투경찰, 의무소방원, 경비교도대,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. 6. · 7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뜻은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의무경찰----- ----- -----. 6. · 7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대관료) ① (생략)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 1.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과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 2.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위약금(대관료의 1	제15조(대관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대관료는----- -----. ----- -----대관료----- -----. 1. ----- -----사유로----- ----- -----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 2.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에서 총사용료

0%)을 공제한 잔액 반환

<신 설>

③ 구미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와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3.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·정지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.

③ ----- 행사와 시장이 -----

-----.

관계법령

□ 소비자기본법
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>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>

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고시 제2014-4호)

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

56.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-2)		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) 신체상 피해발생 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개시일 이전 - 개시일 이후	○ 계약해제 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○ 배상액 배상 ○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 ○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	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「회원제 체육시설업」 제외 • 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* 개시일이란,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.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2-2)

분 쟁 유 형	해 결 기 준	비 고
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개시일 이전 - 개시일 이후	○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 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
○ 사은품 반환 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· 사은품 미사용 시 : 해당 사은품 반환 · 사은품 사용 시 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(단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.) ·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상태로 반환 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·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 ○ 체육시설업 -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 ○ 레저용역업 -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 ○ 할인회원권업 -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		

소관 실 · 과		과학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김우춘
	담 당	장웅재
	담 당 자	김지혜 (480-6152)